

정책연구 2013-02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발간사

일찍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신설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지정 되었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하여 차별 없이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제적으로는 홍콩, 상해, 싱가포르 등과 국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동해안·충북권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치열한 투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한편으로는 각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제도 도입 후 국내외 자본이 도내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 투자진흥지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주투자 진흥지구 운영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모쪼록 본 연구가 향후 지속적인 양질의 투자유치방안에 대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본 연구원의 김현철 박사와 제주대학교의 김동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후 국내외 자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 투자진흥지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연구목적 및 방법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4. 주요연구내용

- 국내경제자유구역 현황분석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최근 국내외 투자유치 동향 및 투자유치 실적분석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의 개선방안

II. 경제특구의 이론적 배경

1. 국내경제특구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국내외 여타지역과 차별화된 세제, 규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목표로 조성된 특별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임.
-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조세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또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이외에 현행법상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지역을 살펴보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구역,
 - 그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등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송도, 영종, 청라)이 2003년 8월 6일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이 추가 지정되었고, 2008년 4월에는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운영 중이고,
- 최근인 2013년 2월에는 동해안권 및 충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음.
- 경제특구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면적이 170km²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원 동해안이 8.3km²로 가장 작음.
-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는 2004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66.7억불(누계, 우리나라 전체 외투의 6.1% 수준) 유치

3. 외국의 투자지원제도

1)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2008년에 20%에서 2010년에 17%로 인하하여, 홍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선도자격(Pioneer Status),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Post-Pioneer Incentive), 생산설비확장(Expansion Incentive),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사업본부설치(Operational Headquarters), 가속감가상각지원(Accelerated Depreciated Scheme), 해외융자액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 금융지원 등 다양함.
- 이중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중요한 세제지원은 선도기업과 투자공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임.

2) 홍콩

- 홍콩의 법인세율인 사업소득세율은 홍콩의 중심 세제로 세율이 낮고(사업소득세 16.5%, 비법인의 경우 16%),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며,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소득세 과세범위는 홍콩으로 한정되며, 외국 세액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 일반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각 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납세의무를 지며, 주식의 배당금(Dividend)이나 양도차익(Capital Gains),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됨.

3) 한국기업의 외국투자사례

- 2000년 전후로 미국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CJ 등 중국에 투자가 활발함
- 해당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한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나 경제자유구역의 획일화된 인센티브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음

III. 제주투자진흥지구

1.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1) 변천사

- 제도도입(2002년 1월) :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투자진흥지구지정)의 신설과 함께 도입됨.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최초 규정(2002년 3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가 신설되어 8개 업종 미화 2,000만불(또는 1,000만불)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개정(2004년 7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으로 총사업비 1,000만불 이상으로 통일이 되고, 업종도 9종에서 13종으로 5개 업종(문화산업, 노인복지,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추가 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 개정(2006년 6월) : “제주특별법” 제 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로 옮겨짐.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개정(2006년 6월) : “제주특별법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사업당 총사업비가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통일 되고, 대상 업종도 14개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 되어 20종으로 확대
- 대상업종 확대(2007년 11월)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추가로 모두 21개 업종으로 확대됨.
- 대상업종 확대(2009년 7월) :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음료제조업 3개업종 추가로 모두 24개 업종으로 확대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 하향조정(2007년 8월) : “제주특별법” 제 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국무총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제주도지사)로 하향 조정됨.

2) 지정기준 및 절차

-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
- 지정계획 제출(투자자) ⇒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지정계획 수립(도지사)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위원장:도지사) ⇒ 지정 및 고시(도지사)

3) 세제혜택

-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500만불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혜택을 받고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를 받음.
-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면제, 재산세는 10년간 100%면제를 받음.
- 각종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00%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50% 감면혜택이 있음.
-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에서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는 3년에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게 개정할 예정.

4)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

(1) 해외직접투자

- 자치단체별로 2011년을 기준 투자유치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전체 109.5억 불의 35.7%로 가장 많고 경기도, 경북, 전남, 울산광역시, 충남, 인천광역시, 충북 그 다음 순이 제주(4.34%)임.
- 제주는 전국대비 인구비중 1.15%, GRDP는 전국평균 0.9% 수준으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제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의 효과로 보임.
-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은 2011년 현재 5.99%로서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서울시(1.75%)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임.

(2) 제주투자진흥지구

- 투자진흥지구 제1호 사업인 동물테마파크를 2005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31일 현재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었음.
- 2013년 3월말 현재까지 지정실적은 34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총투자 약정규모 약 11조 2,486억원, 실투자는 28.6%인 3조 482억원이며,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임.
-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 중 29개 업체가 관광개발업에 치중되어 있고 투자진흥지구로 신청했던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으로부터 함의된 사항들을 일반화하여 문제점들을 유추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남.
 - 투자진흥지구 신청 시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당초 투자 계획과 현재 사업시기 간에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열악
 - 당초 투자 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있을시 투자진흥지구 변경심의 등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 기준이 없음.

IV. 개선방안

1. 업종간 불균형 투자 개선

- 업종별 일몰제 도입
-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 도입
-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 필요
- 제주가 필요한 핵심산업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

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

- 지금의 제주의 투자진흥지구 정책은 진흥(투자유치) 쪽은 제주도가 그리

고 규제, 감시 기능은 도의회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그러나 도의회의 의사결정들이 정치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규제나 감시를 하기 보다는 지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3.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모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본청으로 관리권을 이양하여 관리권을 일원화시킴으로서 투자진흥지구 관리 책임성 강화가 필요
- 지정계획의 이행 미흡시 과태료나 징벌적 조세 부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

4.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선제적으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의 실현성 등을 제 3의 전문기관이 검토 하거나 확인 하는 과정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사업 계획서의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 및 재정적 효과, 세금효과에 대한 과잉 추정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해소 필요
- 기본적으로 현 사후관리체제보다는 사전에 심사 및 지정관리체제를 강화시킬 필요 있음.

5.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투자유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인책으로 조세 감면 효과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감면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제주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은 정책의 효과성 및 유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임. 즉,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측면에서 협상력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포지티브 시스템 사업범위 개선

- 투자진흥지구의 조세지원 사업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좀 더 유연한 사업대상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유치 자율권 차원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되 관광개발업에 과도한 투자를 억제할 위한 투자지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규제 및 진흥정책 구현 필요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이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보다 더 다양한 업종이 다양한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적 지정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제주 전 지역에 사전 지정방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수가 있음.

7. 투자지구의 중도 매각

-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이라는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업체를 경계해야 함.
- 환매기간 이내에 특정업체가 토지매각을 할 시·도조례 재정을 통해 일정한 재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해 환매 조치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혹은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 완료 후 매각하는 제도 도입 필요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3
4. 주요연구내용	3
II. 경제특구의 이론적 배경	5
1. 국내 경제특구	5
2. 경제자유구역	8
3. 외국의 투자지원제도	13
III. 제주투자진흥지구	22
1. 도입배경 및 변천사	22
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23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26
4.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	29
IV. 제주 투자진흥지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1. 업종간 불균형 투자 개선	4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	42

3.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개선	43
4.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44
5.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46
6. 포지티브 시스템 사업범위 개선	48
7. 투자지구의 중도매각	49
V.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6

표 목 차

<표 1> 국내 경제특구유형	7
<표 2> 경제자유구역 현황	9
<표 3> 외국인투자현황	10
<표 4> 경제자유구역 세제인센티브	10
<표 5> 경제특구 유형에 따른 투자지원세제	12
<표 6>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21
<표 7> 제주 투자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세제 비교	28
<표 8> 제주 경제특구 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세제	29
<표 9> 16개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	31
<표 10> 16개시도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 및 투자성장률	32
<표 11> 제주특구진흥지구 사업장	34
<표 12> 투자 및 고용 계획대비 실적	38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제주도는 기존의 법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 현재 7주년이 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음.
 -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려 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2006년의 제주특별법은 그 당시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종래의 제주지역의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여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관광·청정 1차 산업·교육·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 교육 및 의료분야를 특

화시킨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임.

-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216조, 제217조, 218조, 2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외 직접투자 및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¹⁾
 -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지원되는 국내에는 유일한 제도임.
-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세부 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후 국내외 자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 투자진흥지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1) 현재까지 지정된 총8개의 경제자유구역중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중반부터 개청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연구목적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제주지역 투자 진흥지구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한 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 최근, 국내·외 투자유치 특성 및 환경진단을 통한 제주지역 투자진흥 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대안 마련

3. 연구방법

-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함.
-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4. 주요 연구내용

- 국내경제자유구역 현황분석
 -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특징 분석
 - 각종 지원제도의 특징 및 효과 분석(세금감면 현황 등)
 - 지정 대상 사업범위 등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투자계획 및 이행 현황
- 최근 국내외 투자유치 동향 및 투자유치 실적분석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의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II. 경제특구의 이론적 배경

1. 국내 경제특구

1) 경제특구의 개념

- 경제특구의 개념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경제정책,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경제특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한 국가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 규제 완화나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배타적인 경제운영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을 지칭함(임성훈, 2003).
- 경제특구의 개념은 외국에서는 자유지역(Free Zone),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투자진흥지역(Investment Promotion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수출자유지역(Export Free Zone)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경제특구의 전통적 형태는 다양한 유형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들이지만 경제특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국정부가 설치한 경제개방특구들임.
- 중국의 초기 경제특구는 경제개방특구라는 의미의 자유무역지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임성훈, 2003),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외자유치촉진지역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Kwan-Yiu Wong, 1987; 삼성경제연구소, 2004; 최막중, 2003; 권오혁, 2006)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역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자유지역이나 수출가공지역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중국에서의 경제특구는 무역보다는 투자개념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발전하여 왔음.

- 경제특구의 개념은 더욱 진화하여 ‘협회의 경제특구’와 ‘광의의 경제특구’로 구분을 하기도 함.
- ‘협회의 경제특구’는 오늘날의 중국식 경제특구로서 ‘외자유치촉진지역’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광의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촉진지역 뿐 아니라 자유무역지대와 투자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함 (권오혁, 2006).
- 이처럼 경제특구의 개념은 점차 복합형으로 진화하여 최근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개념의 경제특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2) 국내 경제특구유형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국내외 여타지역과 차별화된 세제, 규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목표로 조성된 특별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임.
-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조세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또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이외에 현행법상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지역을 살펴보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구역,
 - 그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등이 있음.

<표 1> 국내 경제특구 유형

구분	관련법	제정시기
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a)}	2006. 2 (2002.4)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b)}	2004. 3 (1970. 1)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9
관세자유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0. 6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2. 12
지역특화발전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2004. 3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04. 12

a)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4)이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06.2)으로 법령개정이 됨

b)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 1)이 '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2000. 1)로 법령개정이 되고 이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령개정이 됨

- 다양한 형태를 보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고 다른 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특별한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이란 '국제 물류와 국제 무역을 위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관세, 임대료, 부담금등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정구역'임.
- 경제자유구역과 무역자유지역의 큰 차이점은 경제자유구역은 의료,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조세정책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무역자유지역은 생산에 대한 수출입시에 관세우대 정책이 있는 지역을 말함.
- 기업도시개발과 지역특화발전구역은 국내의 지방균형 및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조성하는 복합 자족도시인데 지역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구역)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자유무역지역과는 달리 특구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없고, 인·허가 의제 처리 사항만 해당되므로 경제적 유인효과는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활발한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이 국내 최초로 지정되어 최근까지 8곳이 지정되었음.

2.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 도입과정

- 경제자유구역이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이곳에 지정된 곳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
- 경제자유구역은 이전의 경제특구를 말하며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
 -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자유구역'이 사용되었음.
 - 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8월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가 최초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송도, 영종, 청라)이 2003년 8월 6일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이 추가 지정되었고, 2008년 4월에는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운영 중이고,
- 최근인 2013년 2월에는 동해안권 및 충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음.
- 경제특구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의 면적이 170km²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원 동해안이 8.3km²로 가장 작음.

<표 2> 경제자유구역 현황

명 칭	위 치	개발완료시기	면 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 (‘03. 8 지정)	인천	‘03년~‘20년	170km ²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 진해 (‘03. 10 지정)	부산, 경남	‘03년~‘20년	83km ²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 (‘03. 10 지정)	전남, 경남	‘03년~‘20년	86km ²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08. 5 지정)	경기, 충남	‘08년~‘25년	16km ²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대구·경북 (‘08. 5 지정)	대구, 경북	‘08년~‘20년	34km ²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
새만금 군산 (‘08. 5 지정)	전북	‘08년~‘20년	50km ²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동해안 (‘13. 2 지정)	강원동해안	‘13년~‘24년	8.3km ²	물류비즈니스, 관광레저, 비철금속클러스터
충북 (‘13. 2 지정)	충북	‘13년~‘20년	9.1km ²	바이오, 의료기기, 항공여객, 물류, 전장부품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경제자유구청 홈페이지

-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는 2004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66.7억불(누계, 우리나라 전체 외투의 6.1% 수준) 유치

<표 3> 외국인투자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11	총계
전국(억\$)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130.7	136.7	132.7	1,093
FEZ(억\$)	1.2	5.8	1.3	3.1	2.3	7.9	9.5	11.6	23.9	66.7
(비중, %)	(0.9)	(5.0)	(1.2)	(3.0)	(2.0)	(6.9)	(7.3)	(8.5)	(17.9)	(6.1)

* 구역별 누계(억불) : 인천(39.7), 부산·진해(11.3), 광양(8.5), 황해(0.1), 대구·경북(0.9), 새만금·군산(6.2)

- 경제자유구역은 업종별 투자규모에 따라 '5년형 인센티브'와 '7년형 인센티브'로 구분

<표 4> 경제자유구역 세제 인센티브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국내기업 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10%이상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휴양업 : 1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1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 R&D : 1백만불 이상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 개발사업시행자 :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비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휴양업 : 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SOC : 1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 : 3천만불 이상 - R&D : 2백만불 이상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제)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 및 폭 확대가능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3) 타 경제특구의 투자지원 세제 인센티브와 비교

- 김승민(2004; UNCTAD, 2002)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조사한 UNCTAD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현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에 즉각적인 부담을 주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보다 조세 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경제특구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각 종 부담금 등의 명목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면제·감면하는 조세 정책을 사용함.
- 그 외 감가상각제도, 각 종 행정적 서비스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을 인하하여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킴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그 투자는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경제 선순환 관계의 믿음 때문임.
- 특히, 국내의 경제특구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국인 투자에 비해 훨씬 큼.
- 물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유효세율을 인하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외자유치 효과는 거의 없고 세입만 감소시킬 정책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안종석, 1994; 김진수·홍범교, 2007), 또 다른 연구들은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음(Hines and Rice, 1994; 이용섭, 1999; Hines, 2001).
- 국내의 경제특구 유형 중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특화발전구역의 투자지원세제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표 5> 경제특구 유형에 따른 투자지원세제

구 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경제자유구역	세금종류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 관세 3년간 100%면제 (수입자본제)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100%면제 재산세 등 : 10년 100%면제, 3년 50% ²⁾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면제, 3년간 50% - 관세 3년간 100%면제 (수입자본제)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100%면제 재산세 등 : 15년간 100%면제, 이후 3년 50%
	감면요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의료기관 : 500만불 이상 R&D : 백만불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세금종류 - 관세 : 3년간 100%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10년간 100%, 이후 3년 50%	좌동
	감면요건 물류업 : 1천만불,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 5백만불 이상 석사연구원 10인 이상 SOC 사업: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 관광, 물류,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자유무역지역	세금종류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무관세	좌 동
	감면요건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기업도시	세금종류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50%, 2년간 25%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5년 100%, 3년 50%	- 소득세·법인세: 개발구역 입주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5년 100%, 3년 50%
지역특화	세금종류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	

자료: 1. 2009년, “제주도 전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재판집.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재판집

2)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의 감면조례 : 10년)

3. 외국의 투자지원제도

1) 외국의 경제특구

- 경제특구의 초기형태는 중계무역을 활성화 하기위해 주요 국제교역 항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수준의 지역으로 지브롤타(1704), 싱가포르(1819), 홍콩(1841), 함부르크(1888), 코펜하겐(1891) 등이 이에 해당함.
- 근대적 의미의 경제특구의 효시는 1959년 아일랜드에 조성된 '샤논'지역임.
 -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전통적 농업국가였으나, 1958년 '경제확대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전략을 채택하였음.
- 산업화 초기에는 교역 관련 물류 및 국제거래 증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수출입 관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자유무역지대(FEZ) 중심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제조 및 가공 기능이 강화된 수출가공지역으로 변형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를 위한 수출가공지역이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990년 후반 금융위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경남양산, 전북완주 등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면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 수출가공지역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산업 및 기능이 복합화되고 규모가 확대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개발되거나,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산업특구의 형태로 진화했음.
 - 최근에는 전문화된 산업특구 역시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의 경우 2003년 기준 4개의 수출가공지역 인근에 하이테크산업단지 등을 육성하면서 산업 및 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1980년 최초로 4개의 경제특구를 설정한 이래 동남부 14개 연안 도시의 개방 (1984), 푸둥 신구 개발 (199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시/성 정부까지 총 150여개에 달하는 경제 특구를 보유하고 있음.
-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규모의 특화형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 폴란드는 거대한 경제지대가 아닌 핵심기업과 그에 필요한 특화된 경쟁력확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800 ~ 1,000ha의 규모)의 14개 경제 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육성
- 전 세계 경제특구는 1975년 25개국 79개에서 2008년 119개국 230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전 세계 경제자유구역 수 역시 같은 기간에 4개에서 153개로 증가했으며 이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중이 65%에 달함.

2) 경쟁국가의 투자지원제도

-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세제감면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제도로써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세제감면을 포함한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연구비지원,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금융 또는 자금 지원 인센티브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싱가포르의 투자지원제도

-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2008년에 20%에서 2010년에 17%로 인하하여,

홍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선도자격(Pioneer Status),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Post-Pioneer Incentive), 생산설비확장(Expansion Incentive),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사업본부설치(Operational Headquarters), 가속감가상각지원(Accelerated Depreciated Scheme), 해외융자액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 금융지원 등 다양함.
- 이 중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중요한 세제지원은 선도기업관련 인센티브와 투자공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임.
 - 선도자격(Pioneer Status) 인센티브: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5년간 법인세 면제
 -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Post-Pioneer Incentive): 개척 혹은 선도기간 종료 후 추가적으로 사후선도자격(Post Pioneer Status)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5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을 받음.
 - 생산설비 확장 인센티브(Expansion Incentive):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생산설비를 확장할 경우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임.
 - 투자소득 공제제도(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선도자격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 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투자액의 50%까지 과세대상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임.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s) 인센티브: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이자, 로열티, 외환거래수입, 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 원천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이며 비과세 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

세 하는 제도임.

- 또한 금융지원제도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EDB가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지원 폭을 결정하게 됨.
- 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거의 대부분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특징이 있음.

(2) 홍콩의 투자지원제도

- 홍콩의 법인세율인 사업소득세율은 홍콩의 중심 세제로 세율이 낮고(사업소득세 16.5%, 비법인의 경우 16%),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가 없으며,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소득세 과세범위는 홍콩으로 한정되며, 외국 세액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 다시 말하면 홍콩에서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부과하고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도 타국에서 비과세한 경우 비과세임.
- 일반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각 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s Tax) 납세의무를 지며, 주식의 배당금(Dividend)이나 양도차익(Capital Gains),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됨.
 - 이 경우 중요한 점은 홍콩에서 소득의 원천으로 되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그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홍콩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아님.
- 또한 주재원 사무소는 홍콩에서 영업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다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홍콩의 사업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납세자가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홍콩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소득의 원천지가 홍콩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외국원천소득의 역외소득(Off-shore Income)은 비과세임.
- 개개의 거래별로 이익의 발생원천이 판정되고, 1개의 거래에 이익의 발생장소가 홍콩을 포함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역내(On-Shore)와 역외(Off-Shore)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상의 경영관리업무를 행하는 장소와 소득의 원천지는 관련성이 없고,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은 역외소득의 필요조건이 아니고, 한편 홍콩세법 중 하나의 특징은 자본이득의 비과세임.
- 그 거래가 홍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거래의 성격이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투자거래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자본이득(손실)은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이나 투자유가증권의 매매 등에서 발생하여야 하고, 그 거래를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거래이며 자본이득(손실)이 아님.

3) 한국기업 외국투자 사례³⁾

- 2000년 전후로 미국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CJ 등 중국에 투자가 활발함.
- 해당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한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나 경제자유구역의 획일화된 인센티브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음.

3)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투자정보팀. 2013.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를 재판집 빛 재인용

(1) 삼성전자 서안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사례

- 삼성전자는 중국의 서안(西安)에 초기 투자금액 23억불, 총 투자 규모 70억불로 2014년부터 첨단 10나노급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
 - 중국 서안에 삼성의 낸드플래시 공장이 설립되면, 삼성의 두번째 외국 반도체 공장이 됨.
 - 삼성전자는 지난 1996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가동 중인데, 텍사스 주정부는 텍사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저리 용자를 해 줌.
-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재정 보조금 30%,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후에 추가 10년 50% 면제
 - 130만 평방미터 공장 건설, 토지관련 세금면제
 - 매년 물, 전기, 녹화, 물류 비용으로 5억위엔 보조
- 다양한 IT기업들의 연구 거점과 우수 대학이 있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췄음.
 - 서안교통대학을 비롯해 시베이공업대학, 시베이전자과학기술대학 등 여러 기술 대학과 연구소가 집결해 있음.
 - 서안시는 전자·IT 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시안첨단기술특구(XHTZ; XIA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Zone)를 만들어 운영 중임.

(2) CJ 중국 료칭(랴오칭)시 바이오 공장 프로젝트 사례

- 투자액 : 3억 달러(초기의 4,500만 달러부터 3억 달러로 증가)
 - 투자시기 : 2004년 4월

- 2012년 매출 3억5000만 달러 달함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고정자산 투자가 3,000만위엔 이상 시, 2년 동안 지방세의 80%반환
- 료청시는 기존 공장부지 16만평(공장 12만평+발전소 4만평)에 8만평 추가 지원
- 공장 인근에 4만평 규모의 자체발전소도 인가

○ 정부 인센티브 지급 기준

- 3,000만위엔 이상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2년간 80% 지방세 면제
- 고정자산 투자 5,000만위엔 이상 시, 도로 물 전기 가스 등 비용감면
- 고신기술(하이텍)기업 영업이익이 있는 년도부터 3년간 지방세 면제

(3) 베트남 삼성전자 모바일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투자규모 : 6억 7천만불
- 투자기업 : 삼성전자
- 투자지역 : 박닝성(하노이 인근)
- 투자시기 : 2008년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조세감면 : 법인세 50년간 10% 적용, 이익 발생 후 9년간 법인세 감면, 5년간 부품수입 시 무관세
- (지방정부) 고용보조금 제공,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건설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최초 투자시점부터 베트남 정부와 직접 투자논의를 진행하

였으며, 기존 투자인센티브 범위를 초과하는 혜택을 약속받았음.

- 법인세 50년간 10% 적용은 베트남 투자기업들 중 최초이며, 5년간 부품수입세 면제의 경우 삼성전자를 위해 베트남 수상이 특별령을 발령 하였음.
- (지방정부) 베트남 규정상 일정 이상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삼성의 경우 구체적인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액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인력양성교육과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한국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건설 사례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한국)

- 투자기업: 현대 자동차
- 투자규모: 초기 투자금 10억불
- 투자지역: Hope Hull, Alabama
- 투자시기: 2002년 4월에 투자 결정, 2005년 5월에 앨라배마 주에 준공 완료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 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 정부) 총 2.53억불:
 - 주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자금 (State and local funds): 236.6백만불
 - 비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금 (Private money for preparation of the plant site near Montgomery): 1,800만불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20,000개의 직업 창출과 70억불 재정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인센티브 경쟁이 벌어짐.

4) 경쟁국가의 투자지원 인센티브

- 제주의 투자진흥지구는 주변 경쟁국 개발특구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미약하고, 수혜대상 투자업종도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방식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업유치에 경쟁력이 있지는 못함.

<표 6>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 (제주투자진흥지구)	한국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전국)	홍콩 (전국)	중국 (상하이푸동신구)	두바이 (JAFZ)
운영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국가	국가	지방정부	국가
전담 기관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EDB	Invest HK	푸동관리위원회 푸동신구투자유치반	자유무역지대 관리청
유치 목표	국제자유도시완성을 위한 업종	복합개발을 통해 자유로운 글로벌도시 조성	금융 서비스업 중심	금융 서비스업 중심	제조업중심 향후 고부가가치서비스 위주로 전환	관광 및 물류 중심
소득 세 율	• 최고 소득세율 : 35%(외국기업인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또는 소득액 30% 공제 택일)	• 최고 소득세율 : 35%(외국기업인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또는 소득액 30% 공제 택일)	• 최고 소득세율 : 20% (0~20%)	• 최고 소득세율 : 17% (표준세율 15%)	• 최고 소득세율 : 45%	면제
법인 세 율	24.2% (22%+2.2%)	24.2% (22%+2.2%)	17%	16.5%	25%	면제 ¹⁾
법인세 감면 대상	• 국내·외 기업	• 외국기업에 한함 (국내기업 역차별)	• EDB가 승인한 국내외 기업	• 별도의 세제감면 없음	•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고 업종별로 우대	국내은행, 정유회사
세제 인센 티브	• 법인세 등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법인세 등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제조·물류·관광업) • 법인세 등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 업·산업지원서비스 업)	• 선도기업: 5~15 년간 법인세 면제 • 개발확장: 10년 간 법인세율 13% 이하 적용 • 생산설비신규투 자에 대해 3년간 매년 33.3% 감가 상각허용	입주기업의 특 별한 인센티 브는 없고, 개 별사안 별로 인센티브 제 공	• 하이테크 기업에 대 해 15% 우대 세율 적용(일반기업도 신 제품개발·신기술연 구개발비용이 발생 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비 용50%추가공제)	•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a) 원칙적으로 법인세율은 0, 다만, 국내은행은 20%, 정유회사는 55%까지 과세

Ⅲ. 제주투자진흥지구

1. 도입배경 및 변천사

1) 도입배경

-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신설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적으로는 홍콩, 상해, 싱가포르 등과 국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동해안·충북권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치열한 투자유치경쟁을 하고 있음.

2) 변천사

- 제도도입(2002년 1월) :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투자진흥지구지정)의 신설과 함께 도입됨.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최초 규정(2002년 3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가 신설되어 8개 업종 미화 2,000만불(또는 1,000만불)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00만불이상 투자사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 1,000만불 이상 투자사업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개정(2004년 7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7조 개정으로 총사업비 1,000만불 이상으로 통일이 되고, 업종도 9종에서 13종으로 5개 업종(문화산업, 노인복지,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추가 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 개정(2006년 6월) : “제주특별법” 제 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로 옮겨짐.
-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개정(2006년 6월) : “제주특별법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사업당 총사업비가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통일 되고, 대상 업종도 14개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 되어 20종으로 확대
- 대상업종 확대(2007년 11월)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추가로 모두 21개 업종으로 확대됨.
- 대상업종 확대(2009년 7월) :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음료제조업 3개 업종 추가로 모두 24개 업종으로 확대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 하향조정(2007년 8월) : “제주특별법” 제 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국무총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제주도지사)로 하향 조정됨.

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1) 지정대상 업종

-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36조에 명시 됨.

-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골프장업은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 영화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산업, 방송영상물산업, 문화재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
 - 궤도사업 : 궤도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특별법 제182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의4]
 -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의료기관 [제주특별법 제192조, 의료법 제33조]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개설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 내국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신규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함(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식료품·음료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 설치시설로 한정)

2) 지정기준

-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
 - 총 투자사업비의 범위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 구입비 등

3) 대상지역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령에 의해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을 것.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 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 해당지역의 토지 3분의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 지정계획 제출(투자자) ⇒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지정계획 수립(도지사)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위원장:도지사) ⇒ 지정 및 고시(도지사)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 2007년 7월3일 제2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사업 및 제주첨단과학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⁴⁾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제주지역의 대기업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될 토대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를 당초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나 2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4)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 못하게 하는 제도로 실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은 2007년 7월2일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으로서 11개 기업집단 399개 계열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경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추가투자 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의 기업도 출자총액제한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증액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음

게 되었음.

- 제주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투자지원 조세제도로,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의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관세,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에 대해 세제혜택이 조금씩은 상이하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500만불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혜택을 받고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를 받음.
-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면제, 재산세는 10년간 100%면제를 받음.
- 각종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00%면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50% 감면혜택이 있음.
- ‘제주특별법 제220조’에 의거하여 국·공유재산 임대는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 범위내 감면이 됨.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가 됨.
-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에서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는 3년에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게 개정할 예정.
- 또한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도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이 신설되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비해 관세면세의 혜택은 제외됨.5)

- 국내 여유 자본도 상당하고, 대규모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본 유인정책은 내국인투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음.6)

<표 7> 제주 투자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세제 비교

구 분		조세감면 내용
투자 진흥 지구	세금 종류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⁷⁾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수입자본제에 대한 관세 : 자본제 최초 수입일 3년이내는 100%면제 - 재산세 등 : 10년간 100%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75% 범위 내 감면
	감면 요건	- 관광, 문화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 지역	세금 종류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수입자본제에 대한 관세 : 초기 3년이내는 면제 - 재산세 등 : 15년간 100% - 국·공유지 임대 :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100% 범위 내 감면
	감면 요건	고도기술산업연구소 : 5백만불 이상 투자, 10인 이상 상시고용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 5백만불 이상, 석사연구원 10인 이상 SOC 사업: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 관광, 물류,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중 투자지구에 따른 투자지원세제의 주요 내용은 <표 8>과 같음

- 5) 제주특별법 제 3단계 제도개선에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신설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임.
- 6)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조세혜택 적용
- 7) 정부는 2008년 제주특별법 제 3단계 제도개선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 100%면제, 2년 50%감면에서 5년 100% 면제, 2년 50%감면으로 개정함.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의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신설되어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으로 개정함.

<표 8> 제주 경제특구 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세제

구분	국세			지방세			비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특별법 §237 및 조특법 §121의2, 2의4)	○			○	○	○	-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재산세 등: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특별법 §237, 조특법 §121의8 및 §121의10)	○			○	○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5년 100%, - 관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특별법 §237, 조특법 §121의9 및 §121의11)	○			○	○	○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 100%, - 관세 면제

자료: 2009. 김동욱.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호 제1호. 109-126.

4.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

1)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규모현황 및 실적분석

- 자치단체별로 2011년 기준 투자유치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전체 109.5억 불의 35.7%로 가장 많고 경기도, 경북, 전남, 울산광역시, 충남, 인천광역시, 충북 그 다음 순이 제주(4.34%)임.
- 제주는 전국대비 인구비중 1.15%, GRDP는 전국평균 0.9% 수준으로 경

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제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의 효과로 보임.⁸⁾

- 2003년도를 보면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의 순위가 38억5천불의 서울(1위), 693억불의 충남(2위) 등이며 제주는 3백만불의 인천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제주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가 급성장한 시기는 2009년 이후부터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위권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 2011년도에는 인천광역시(6억3천8백만불, 7위), 충청북도(5백9십4백만불, 8위) 에 이어 4백7십5만불을 기록 9위에 랭크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대비하여 차별적으로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인천과 더불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10년도를 제외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이고 있음.

8) 16개 시도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표 10>에 요약되어 있음.

<표 9 > 16개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

(신고기준 · 단위: 백만불 · %)

지역	2003	2006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3,856	5,554	4,937	2,677	3,911
경기도	483	1,937	1,323	1,664	1,347
인천광역시	03	142	920	514	638
부산광역시	78	232	156	253	345
대구광역시	13	18	42	71	133
광주광역시	35	16	7	75	122
대전광역시	59	57	204	359	124
울산광역시	88	277	447	243	656
강원도	32	40	24	50	117
충북	168	202	953	200	594
충남	693	1,407	209	667	642
전북	27	53	244	276	223
전남	64	72	499	219	667
경북	52	439	446	2,706	835
경남	91	441	296	197	123
제주도 (비중)	2 (0.03%)	9 (0.08%)	421 (1.27%)	390 (3.69%)	475 (4.34%)
총계	5,744	10,896	11,128	10,561	10,952
미정	-	-	895	2,509	2,718

자료 : 각 년도/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동향”, 산업통상자원부

○ <표 10>은 2003, 2010, 2011년도에 해당하는 16개시도의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 및 투자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되었음.

- <표 10>의 2, 3, 4열은 각각의 해당년도의 실질 GRDP에 대비한 각 년도의 투자규모 비율을 나타냄.
- 각 해당년도의 실질 GRDP의 기준년도는 2005년도임.

<표 10> 16개시도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 및 투자성장률⁹⁾

(단위: %)

지역	2003년	2010년	2011년	투자성장률1	투자성장률2
서울특별시	2.26	1.28	1.75	46.1	1.4
경기도	0.40	0.85	0.62	-19.1	178.9
인천광역시	0.01	1.15	1.33	24.1	21166.7
부산광역시	0.20	0.55	0.68	36.4	342.4
대구광역시	0.06	0.25	0.44	87.3	923.1
광주광역시	0.24	0.38	0.58	62.7	248.6
대전광역시	0.31	1.79	0.58	-65.5	110.2
울산광역시	0.27	0.61	1.45	170.0	645.5
강원도	0.17	0.22	0.47	134.0	256.6
충북	0.81	0.68	1.90	197.0	253.6
충남	2.13	1.02	0.90	-3.7	-7.4
전북	0.13	1.06	0.79	-19.2	725.9
전남	0.18	0.49	1.43	204.6	942.2
경북	0.11	4.55	1.36	-69.1	1505.8
경남	0.19	0.31	0.18	-37.6	35.2
제주도	0.03	4.93	5.99	21.8	23650.0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 <표 10>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은 2011년 현재 5.99%로서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서울시(1.75%)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임.

9) <표 10>의 제5, 6열의 투자성장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거하여 도출하였음.

$$\frac{\text{비교년도투자액} - \text{기준년도투자액}}{\text{기준년도투자액}} \times 100$$

투자성장률1은 기준년도가 2010년도이고 투자성장률2는 기준년도가 2003년도로서 통상 전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성장률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후자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초반기와 대비 얼마나 투자가 증가하였는지 보기 위함임.

- 2003년도의 경우 제주의 GRDP대비 투자비율은 인천광역시보다 조금 앞선 0.03%이며 전국 16개광역시.도 중 15위를 랭크 하고 있었음.
 - 2010년도의 경우 전국1위인 4.93%로서 그 뒤를 경상남도(4.55%)가 따르고 있음
 - 2011년도 들어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 초반에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효과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표 10>의 제 5, 6열은 2003년도 및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의 투자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비하여 볼 때 막대한 투자성장률의 증가가 보이고 있는바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으로 인한 사업효과의 유효성으로 사료됨.
- 투자성장률1에서 보여지듯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투자성장률은 전남, 충북 등 에 이어 10위(21.8%)를 기록하고 있음.
 - 하지만 투자성장률2를 보면 2003년도 대비 투자성장률은 부려 236배가량의 증가를 기록하여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따르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 -7.9%로서 16위를 나타내고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분석

- 투자진흥지구 제1호 사업인 동물테마파크를 2005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31일 현재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었음.
- 2013년 3월말 현재까지 지정실적은 <표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34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되었고, 총투자 약정규모 약 11조 2,486억원, 실투자는 28.6%인 3조 482억원이며,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임.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 도내 업체 수주액은 총 1조6천87억8백만원 중 7천9십4억9천3백만원으로 44.1%임.

- 총고용계획은 23,240명이며 총고용계획대비 고용실적은 9.4%임.

<표 11 > 제주 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장

	투자진흥지구	지정날짜	투자금액 (감면예상액)	투자율	공정율	면적	진행상황
1	동물테마파크	'05. 7.	560억원(82억원)	44.4%	30%	510천m ²	공사중지
2	비치힐스리조트	'06. 11.	3,322억원(208억원)	15.1%	35%	3,345천m ²	일부운영
3	해비치리조트	'07. 6.	1,749억원(118억원)	91.6%	100%	26천m ²	완료
4	나비·곤충·어류박물관	'07. 6.	167억원(32억원)	62.8%	100%	27천m ²	완료
5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07. 12.	4,366억원(306억원)	6.5%	0%	743천m ²	공사중
6	성산포(섬지)해양관광단지	'08. 4.	3,870억원(284억원)	46.3%	46%	651천m ²	일부운영
7	묘산봉관광지	'08. 4.	6,059억원(429억원)	16.9%	16.9%	2,575천m ²	일부운영
8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08. 12	310억원(12.6억원)	100%	100%	49.5천m ²	완료
9	라운더마파크	'09. 3	233억원(24억원)	106.3%	100%	202천m ²	완료
10	이호유원지	'09.7.01 (11.3.21)	4,212억원	28.0%	12%	276천m ²	공사중
11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09.07.01	232억원	58.9%	68%	213천m ²	일부운영
12	부영호텔	'09.07.01	1,277억원	37.5%	78.25%	21천m ²	공사중
13	신화역사공원	'09.12.30	15,945억원	14.3%	44.1%	4,002천m ²	공사중
14	제주 셰프라인 체험랜드	'09.12.30 (11.5.17)	273억원	86.5%	100%	103천m ²	공사중
15	뉴대장금	'09.12.30 (12.10.16)	74억원	90.9%	100%	9천m ²	완료
16	오메가파크	'10.03.10	92억원	110.5%	100%	49천m ²	완료
17	한라힐링파크	'10.03.10	497억원	22.9%	28%	132천m ²	일부운영
18	제주헬스케어타운	'10.11.03	7,845억원	10.5%	20.06%	1,539천m ²	공사중
19	트리아농	'10.12.29	114억원	150%	100%	30천m ²	완료
20	삼매봉밸리유원지	'11.4.11	1,730억원	8.7%	7%	95천m ²	공사중
21	라운프라이빗타운	'11.4.11	4,050억원	94.5%	94.6%	785천m ²	일부운영

22	판타스틱트릭타트	'11.7.22	105억원	103.1%	100%	30천m ²	완료
23	제주롯데리조트	'11.11.9	1,978억원	71.0%	72%	414천m ²	일부운영
24	제주해양과학관	'12.02.20	1,226억원	114.4%	100%	94천m ²	완료
25	제주뮤지엄컴플렉스	'12.07.04	227억원	59.0%	60%	59천m ²	일부운영
26	제주영어교육도시	'12.07.04	17,806억원	38.2%	38.3%	3,792천m ²	일부운영
27	제주아덴힐리조트	'12.07.11	2,492억원	34.9%	43.66%	295천m ²	일부운영
28	중앙병원신제주분원	'12.10.31	517억원	66.8%	100%	29천m ²	공사중
29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12.10.31	128억원	85.4%	99%	10천m ²	완료
30	부영리조트	'12.12.31	1,203억원	36.8%	78.25%	325천m ²	공사중
31	더코브 관광호텔	'12.12.31	564억원	64.1%	65%	9천m ²	공사중
32	부영호텔2, 3, 4, 5	'12.02.15	9,179억원	13.0%	0%	294천m ²	미착공
33	부영랜드	'12.02.15	966억원	38.2%	0%	168천m ²	미착공
34	부영 청소년수련원	'12.02.15	123억원	31.1%	0%	20천m ²	미착공

-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 중 29개 업체가 관광개발업에 치중 되어 있고 투자 진흥지구에 신청했던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었음.
-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중 최종 완료되어 100%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10곳, 일부운영 되고있는 업체가 10곳, 공사중(공사중지 포함)인곳이 11개업체 그리고 미착공 업체가 3곳임.
 - 공사 완료 업체들은 '해비치 리조트', '라운더마파크', '제주해양과학관' 등 총 10개업체 이며 해당 자료에 의거하면 지구지정시 계획과 현재 결과를 대비하여 볼 수 있음.
-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중 일부운영 업체는 '비치힐스리조트', '한라힐링파크',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10개업체에 달함.
 - 이들 10곳의 일부운영업체는 공사계약완료기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공사중이지만 부분적으로 완공된 시설을 일부 운영하는 7개 업체가 있음.

- 공사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완료가 되지 않고 시설물의 일부를 운영하는 세 개의 업체 ('비치힐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롯데 리조트')가 있으며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보여짐.
-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중 미착공 업체는 '부영호텔', '부영랜드' 그리고 '부영청소년수련원' 으로서 세 곳 공히 2012년도 중반이후에 지정이 되었고 2018년 중반이후에 완공 예정으로 있음.
- <표 12>는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 중 최종 완료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비율, 고용계획대비 고용실적비율, 지역업체 참여계획대비 실적비율 그리고 지역업체 투자계획대비 실적 비율을 정리한 것임.
 - <표 12>의 첫 번째 열은 <표 11>에서의 연계성을 위해 구분 원번호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두 번째 열은 업종을 세 번째 열은 업체명을 나타냄.
 - 10개의 완료 업체중 '오메가파크', '트리아농' 등 7개 업체가 전문휴양업에 해당되고 나머지 세 업체는 각각 관광호텔업(해비치관광호텔), 교육연구시설(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관광식당/관광장업(뉴대장금)에 해당함.
- 네 번째 열은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비율을 나타내며 총 10개의 업체중 6개의 업체가 100%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당초계획과 20%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한군데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이며 나머지는 80%이상이어서 양호한 결과라 사료됨.
 - 해당사업체중에서 제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트리아농 으로서 1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다섯 번째 열은 고용계획대비 고용실적비율을 나타내며 총 10개의 업체중 5개의 업체가 100%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당초계획과 20%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나비곤충어류박물관'(39%), '뉴대장금'(47%), '트리아농' (49%)임.

- 해당사업체중에서 제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라운더마파크'로서 1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여섯 번째 열은 지역 업체 참여계획대비 실적비율을 나타내며 총 10개의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제외하여 100%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음.
 - 해당사업체중에서 100%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체는 '오메가파크'이나 83%의 실적을 시현하므로 20%내의 계획대비 오차를 보이고 있음.
 - 해당사업체중에서 제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해비치관광호텔'로서 1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일곱 번째 열은 지역업체투자계획대비 실적 비율을 나타내며 총 10개의 업체중 1개의 업체를 제외하여 100%이상의 지역업체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음.
 - 해당사업체중에서 100%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체는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이며 91%의 실적을 보여 100%에 근사하고 있다고 사료됨.
 - 해당사업체중에서 제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오메가파크'로서 183%의 실적을 보임.

<표 12> 투자 및 고용 계획대비 실적

(단위: %)

구분	업종	명칭	투자계획대비 실적	고용계획대비 실적	지역업체참여계획대비 실적	지역업체투자계획대비 실적
3	관광호텔업	해비치관광호텔	92	127	173	100
4	전문휴양업	나비곤충어류박물관	63	39	140	91
8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100	83	110	151
9	전문휴양업	라운더마파크	106	185	100	100
15	관광식당/공연장업	뉴대장금	91	47	100	100
16	전문휴양업	오메가파크	110	117	83	183
19	전문휴양업	트리아농	150	49	119	115
22	전문휴양업	판타스틱트리아트	103	133	167	106
24	전문휴양업	제주해양과학관	114	106	100	134
29	전문휴양업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85	61	100	100

자료: <표 9>를 바탕으로 자체작성

○ <표 12>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적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요약하여 볼 수 있음.

- 당초 고용규모의 20/100 이상 변경되거나, 당초 투자금액의 20/100 이상 변경 될 경우 지정변경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현재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보임.
- ‘트리아농’의 경우 투자실적대비 고용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의 경우 다른 사업체에 비해 투자와 고용실적 및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고용효과 및 실적이 다른 실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

어진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지역업체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다른 실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 10개의 해당 사업체 중에서 '라운더마파크', '판타슬트릭아트', 그리고 '제주해양과학관'의 경우 투자, 고용, 지역업체참여 및 지역업체 투자실적 전반에 걸쳐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으로부터 함의된 사항들을 일반화하여 문제점들을 유추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10)
-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남.
 - 투자진흥지구 신청시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당초 투자 계획과 현재 사업시기 간에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열악
 - 당초 투자 계획과 실적간에 지나친 괴리가 있을시 투자진흥지구 변경 심의 등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 기준이 없음.

10)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은 가급적 국세.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실제 감면세액에 대한 분석도 할 예정이었으나 통계자료 입수문제로 인하여 조세감면관련 분석은 할 수 없었다는 분석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IV. 제주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¹¹⁾

- 본보고서 제III장 4절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실적분석의 함의에 의거, 업종간 불균형 투자문제, 투자진흥지구 신청업체들이 거의 모두 지정되는 문제와 관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문제,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문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이에 더해 조세관련 분석의 경우는 분석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함의점을 도출 할 수 없지만 제도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¹²⁾과 신문, 학술지 등 관련자료로 부터 함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 문제점 및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개진코자 함.

1. 업종간 불균형 투자 개선

1) 문제점

- 투자의 밴드웨건 효과의 위험성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대부분의 투자진흥지구의 업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4대 핵심산업(관광·청정 1차 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IT, BT)중에서 관광업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나머지 업종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34개 지구 중 29개가 관광개발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종합휴양업

11) 2013년 5월2일 제주도청 제도개선 실무 T/F팀 2차회의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과제”의 제목으로 15개 과제를 적시하였으나 본연구와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 참고하기 바람.

12)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들은 제주투자 진흥지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두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하였음.

10개, 전문휴양업 13개, 관광호텔업 5개, 공연장 및 관광식당업 1개, 연수원 1, 의료기관 1, 박물관 1, 외국교육기관 1, 청소년수련원 1개소임.

- 지금까지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는 총 12개 사업, 총사업비 규모 5조 5,233억원으로서 산업 형태는 제조업 2개 사업(201억), 관광개발 서비스 산업 10개 사업(5조 5,032억원)으로 관광개발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 편중된 투자 업종으로 지정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역적 특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지역산업의 획일화가 이루어지면 경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부침이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아 불안정할 수 있음.
- 또한 동일업종 간의 경쟁심화로 기존사업장의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개선방안

- 업종별 일몰제 도입
 - 관광개발업에 집중된 투자(34개 지구 중 29개)를 자제하고 '제주특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4+1' 핵심산업(관광·청정 1차 산업·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종별 일몰제 도입 검토 필요
-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 도입
 - 관광개발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제도를 감면율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강화필요
-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 필요
 - 투자진흥지구의 최소 사업비는 5백만불인데 업종별로 투자금액 조정 필요
 - 예를 들어, 집중된 관광개발업 투자사업에 한해서는 투자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500만불 → 3,000만불)

- 싱가포르 정부가 금융, 해양, 바이오메디컬, 물류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더불어 세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해 외국기업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처럼 제주가 필요한 핵심산업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

1) 문제점

- 지금까지 34개 지구에서 투자진흥지구가 신청되었지만 지금 보류된 롯데호텔 외에는 모두 지정을 받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가 도의 지명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어 지구지정에 따른 부작용, 환경문제 등 통제 기능이 약화

2) 개선방안

- 지금의 제주의 투자진흥지구 정책은 진흥(투자유치) 쪽은 제주도가 그리고 규제, 감시 기능은 도의회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그러나 도의회의 의사결정들이 정치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규제나 감시를 하기 보다는 지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함.
 - 투자진흥지구가 진흥정책이면서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가 주도하는 위원회 구성보다는 각 관심 주체들인 도, 도의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한 다양한 심의 위원 구성 필요
 - 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도집행부 추천 40%, 도의회 추천 40%, 시민단체 추천 20%로 위원회 구성

3.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1) 문제점

- 투자계획대비 실행율이 저조함.
 - 공정을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임
- 법체계가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상당기간 사업진척이 부진하여도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사업지도에 한계가 나타남.
 - 동물테마파크(2005. 11-2007. 4)의 경우 사업기간을 2014년 5월까지 연장해주었으나 현재 공사중지 상태임.
 -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지(2003-2011)의 경우 공사예정기간이 이미 끝났으나 공정을과 투자율은 46%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기간 연장 이외에 과태료 부과, 세금 인센티브 회수 등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함.
- 지구지정은 도에서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모호하고,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곤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2) 개선방안¹³⁾

-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모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본청으로 관리권을 이양하여 관리권을 일원화시킴으로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성 강화가 필요
- 지정계획의 이행 미흡시 과태료나 징벌적 조세 부과

13) 최근 제주도가 제안한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동일한 안이 있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지구 지정 해제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

- 지정계획서 상의 단계별 사업진도가 부진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도 일정기간 이행이 안 될 때 과태료 부과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

4.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1) 문제점

○ 현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과 조례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216조, 제217조, 218조, 2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지만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은 없음.

○ 조례상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 악용가능이 있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나.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다.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라.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마.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2)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좀 더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사업계획서상의 도민고용계획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실제 공정률을 참고하여 해제 여부 판단필요
- 선제적으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의 실현성 등을 제 3의 전문기관이 검토 하거나 확인 하는 과정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필요
 -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후에 사업계획서를 심사
- 사업 계획서의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 및 재정적 효과, 세금효과에 대한 과잉 추정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해소 필요
 - 각종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 현재의 사후관리체제보다는 사전에 심사 및 지정관리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무계획의 건전성 등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시스템 구축 필요

5.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1) 문제점

- 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조세감면을 해주지 않아도 될 업종의 기업들에게까지 조세감면이 제공되는 등 획일적인 조세감면제도 운영에 있다는 것임.¹⁴⁾
 - 이는 조세감면제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부합하게 되면 투자실행의 의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임.
 - 관련 연구를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유효세율을 인하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외자유치 효과는 거의 없고 세입만 감소시킬 정책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안중석, 1994; 김진수·홍범교, 2007), 또 다른 연구들은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음(Hines and Rice, 1994; 이용섭, 1999; Hines, 2001).
 - 또한 장윤종·한병섭(2001)의 연구에 의하면,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서 조세감면이 없어도 국내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조사대상의 3/4에 이르고 있어서,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함.
- 또한 사업자는 장밋빛 청사진에 의한 과다 기대 추정이익을 산출하고도 당국은 이에 따른 절세 및 감면 혜택 홍보로 사업자와 도민, 시민단체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함.
-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인 '동물테마파크'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34개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들의 투자이유, 투자애로 상황 등의 기초실태조사가 없었음.

14) 예를 들어, 최근 휴양관련 펜션사업은 중국관광객 및 다양한 수요확충으로 수익성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외부에서의 보조없이도 펜션공급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질 수 있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수요가 떨어지는 도가 원래적으로 지향하는 사업들에 투자 수요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투자유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유인책으로 조세 감면 효과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감면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제주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은 정책의 효과성 및 유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임. 즉,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측면에서 협상력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세감면 기간 및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세감면이라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3년, 100% 감면, 그 후 2년 50% 감면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감면내용의 확정적 기간 및 수준을 최장 3년 또는 최장 2년까지 감면한다는 '최대한도' 방식으로 바꾸는 것
 - 현재의 조세감면 수혜조건은 그대로 두되, 이 조건들을 조세감면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 조세감면 여부 및 수준은 '투자진흥지구 관련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평가하여 결정된다고 변경하는 것임.
 -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결정과 투자이행 의무를 구체적인 투자 및 고용내용과 연계시키는 것 임(이성봉 등, 2008).
 - 둘째, 조세휴일(Tax holiday)방식의 감면을 최소화 하되 구체적 투자행위와 연계된 조세감면제도의 운영, 세액공제 제도 또는 소득공제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안종석, 2005).

- 조세휴일 방식의 감면제도는 투자의 구체적인 성과와 인센티브를 연계 시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방식의 감면제도는 구체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6. 포지티브 시스템 사업범위 개선

1) 문제점

- 현재의 조세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하는 사업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 때마다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동 시행령 제36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8항에서 '제주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192조는 외국인이 개설 의료기관을 칭하고 있어 병원급 국내 의료기관의 진입을 막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case by case 승인제도이므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산업 외의 연관 부대사업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인지를 추가 심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개선방안

- 제3단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원,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고등학교가 포함되었지만, 향후, 병원급 국내의료기관, 금융, 항공, 물류산업 등의 중점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와 기업의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일수 있는 5단계 제도개선에는 투지진흥지구의 조세지원

사업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좀 더 유연한 사업대상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¹⁵⁾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유치 자율권 차원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되 관광개발업에 과도한 투자억제를 위한 투자지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규제 및 진흥정책 구현 필요
- 현재의 업종만으로 지정받는 투자진흥지구 방식은 개별 투자진흥지구간의 기업들이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의 창출, 도입, 확산과정에서 상호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이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보다 더 다양한 업종이 다양한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적 지정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제주 전 지역에 사전 지정방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수가 있음.

7. 투자지구의 중도 매각

1) 문제점

- 일부 투지진흥지구가 개발차익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 발생
 - 최근 모업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631,782m²을 지정받아 74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5.9%인 3만7,829m²를 68억원에 제 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46억여 원의 차익을 남김.¹⁶⁾

15) 제주도가 제안한 5단계 제도개선중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1)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000만 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500만 불 이상) 유지

(2)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지사로 이관

(3) 투자 사업체가 제주자치도내 건설업체와 도급 또는 공동도급을 체결하는 경우,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임.

16) 시사제주(www.sisajeju.com), 2013, 3. 18

- 이중 2만9,228m²(77%)는 2006년도에 매입한 국유지임.
- 이와 같은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이라는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를 경계해야 함.

2) 개선방안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윤추구 동기에 의거 시세차익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정부로부터 각종혜택을 받는 토지의 경우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순수 사유재의 취득과 거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볼 수 있고 따라서 투자진흥지구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는 명분상 옳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견제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 임.
 - 환매기간 이내에 특정업체가 토지매각을 할 시 도조례 재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해 환매 조치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예를 들면, 환매기간 이내에 특정업체가 토지매각을 시도 할 경우 투자지구지정 해제를 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새로운 매수자가 특정 토지를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원천적으로 봉쇄
- 혹은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매각하는 제도 도입 필요

V. 결론

- 현재 전 세계에는 저마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구역,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에 놓여 있음.
- 제주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다소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후 국내외 자본, 특히 중국위주의 자본이 제주로 급격히 유입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 투자진흥지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기본적으로 현 사후관리체제보다는 사전에 심사 및 지정관리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무계획의 건전성 등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시스템 구축 필요
- 현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 도입, 업종별 최소 투자규모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
 - 과도한 관광개발에 관한 업종의 조세감면 적용의 제고가 필요
 - 혹은 투자규모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제주가 필요한 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조세감면 기간 및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세감면이라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3년, 100% 감면, 그 후 2년 50% 감면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 감면내용의 확정적 기간 및 수준을 최장 3년 또는 최장 2년까지 감면한다는 '최대한도'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결정과 투자이행 의무를 구체적인 투자 및 고용 내용과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 필요함.
-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해 환매 조치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혹은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매각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구성 제도개선이 필요함.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도집행부 추천 40%, 도의회 추천 40%, 시민단체 추천 20%로 위원회 구성
 - 지구지정은 도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는 체제를 도로 일원화시킴으로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성 강화 필요
 - 제주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투자진흥지구의 조세지원 사업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좀 더 유연한 사업대상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

< 참고 문 헌 >

- 강경식. 2013. “투자진흥지구 개선,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요지.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토론회.
- 권오혁. 2006.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조 비교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283-301.
- 김승민. 2004. “유럽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주요특징과 시사점 -”.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7호: 435-458.
- 김진수 · 홍범교. (2007). “외국인투자기업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제7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동욱. 2009.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호 제1호. 109-126.
- 김동욱. 2009. “제주도 전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모색”,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활성화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제주발전연구원.
- 김동욱. 2007.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
- 김진수 · 홍범교. 2007. “외국인투자기업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제7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형주. 2010.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제주발전연구원.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투자정보팀. 2013.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 민 기. 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성과와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활성화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모색, 제주발전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각 년도/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동향」.
- 안중석. 2005.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한구조세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안중석. 1994.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원중학 외. 2008.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봉. 2010.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분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97-119.
- 이성봉 외. 2008. 「외국인투자제도 선진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용섭. 1999.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임성훈. 2003.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와 고려사항”. 「경제정책연구」. 5(12): 167-237.
- 장윤종 · 한병섭. 2001. 「외국인직법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산업연구원.
- 정수현. 201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과 개선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령집」.
- 제주특별자치도. 2013. 5.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안)」.
- 최막중. 2003.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 Hines, J. R. (2001). Tax Sparing and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James, R. Hines Jr(ed).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72.
- Hines J. R. and E. M. Rice, (1994).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1): 149-182.

-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Transnational Corporational and Export Competitiveness, New York: United National Publications.
- Wong, Kwan-Yiu. (1987).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Experiment: an Appraisal. Geografiska Annaler, 69b: 27-40.

홈페이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은행: <http://www.bok.or.kr/main/korMain.action>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Reform Measure of the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Hyuncheol Kim and Dongwuk Kim

Keywords :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Reduction Structure, Negative System.

Ever since the 21st century, the age of extreme competition, every local government of many countries has endeavored to attract massive investment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foreign (and/or domestic) direct investment. Being introduced in the Jan. 2001, the system of the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has caused the inflow of the substantial amount of investments, especially investment from China, into the Province. However, the ongoing system revealed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the deprivation condition, moral hazards which abuse the syste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ime to redesign the system, so that it is on the right track for right direc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in the system which requires essential remedies. Our study has found the several problems in the tax reduction structure and managing the system, and so on. The major proposals of the study are the correction of the unequal bias of the investment into specific industry, adoption of the negative system instead of present positive system, etc.

연구진

연구책임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정책연구 2013-02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 양영오

발행일 || 2013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온누리디앤피

ISBN : 978-89-6010-318-4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